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	휴먼뉴딜 한국판뉴딜
보도 일시	2022. 4. 3.(일) 12:00 2022. 4. 4.(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4. 3.(일) 12:00
담당 부서	노동시장정책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	책임자	과 장 박병기 (044-202-7292)
		담당자	사무관 김원호 (044-202-7304)
			주무관 차정환 (044-202-7346)

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
「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」 사업 시작!
- 재직자의 직무전환 등 지원을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-
- 노사합의를 통한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최대 5억원 지원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**4월 4일부터 「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」, 「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」의 신청·접수를 시작**한다고 밝혔다.

○ 「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」은 **저탄소·디지털화 전환**에 충격을 받는 **기업·재직자를 선제적·체계적으로 지원**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.

□ **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**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**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·전환 등을** 위한 비용을 **지원**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○ **(지원 대상)** 저탄소·디지털 전환 사업주*(기업규모 무관)

* 최근 3년(19년~) 이내 사업재편(산업부)·사업전환(중기부)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
○ **(지원 내용)** 직무심화·전환 훈련, 이·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

* 단,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,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, 직무심화·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

- **(지원 금액)** 1인당 최대 300만원

- **(신청 주기)** 3개월 단위로 신청

- **(지원 기간)** 최대 12개월

- **(신청 기한)** 승인 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

 *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

○ **(지원 요건)**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·사 협의,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

□ **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**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**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**가 있는 경우 **총 5억원 한도**에서 **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%를 지원**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○ **(지원 대상)** 저탄소·디지털 전환 사업주*(기업규모 무관)

 * 최근 3년(19년~) 이내 사업재편(산업부)·사업전환(중기부)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
○ **(지원 내용)**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* 등 임차비 지원

 * 직무전환 교육·훈련 시설 임차, 기숙사 임차, 통근버스 임차 등

- **(지원 금액)** 임차한 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

 * 단,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%까지 지원

- **(신청 주기)** 3개월 단위로 신청

- **(지원 기간)** 최대 12개월

- **(신청 기한)** 승인받은 사업참여 신청서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

 *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

○ **(지원 요건)** ①고용유지에 대한 노·사 합의,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(지원금 받은 기간 + 1개월),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

□ **김영중 고용정책실장**은 “최근 **저탄소·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**이 **가속화**되고 있어,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**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**해졌다.”라면서

○ “오늘 신설되는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이 **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**가 되기를 **기대한다**”고 밝혔다.

□ 신규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또는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☎1350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붙임 1>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개요

<붙임 2>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개요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개요

□ **(사업 개요) 산업구조 전환** 등에 따라 **고용조정이 불가피**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**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**하는 경우 이를 지원

* (추진 근거) 「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」('21.7.22.)

□ **(지원 대상) 저탄소·디지털 전환** 사업주*(기업규모 무관)

* 최근 3년(19년~) 이내 사업재편(산업부)·사업전환(중기부) 승인기업, 노동전환컨설팅 참여기업,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
□ **(지원 내용)** 직무심화·전환 교육훈련·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**교육비 지원**

* 단,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,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, 직무심화·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

○ **(지원 금액) 1인당 최대 300만원**

○ **(신청 주기) 3개월 단위**로 신청

○ **(지급 기간) 최대 12개월**

○ **(신청 기한)** 승인 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**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** 신청

*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

□ **(지원 요건)** ① **교육 등 실시**에 대한 **노·사 협의**, ② **최소 3개월** 이상의 교육 실시

□ **(예산) 51억원**(지원인원 2,300명)

□ **(지원 절차)**

직무전환·전직지원 계획서 제출	→	계획서 승인	→	직무전환·전직 지원서비스 제공	→	지원금 신청	→	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사업주 → 고용센터		고용센터		사업주		사업주 → 고용센터		고용센터 → 사업주

붙임 2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개요

□ **(사업 개요) 저탄소·디지털 전환**으로 인한 위기산업 **노·사가 합의 통해 고용 유지**할 경우 **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**

* (추진 근거) 「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」('21.7.22.)

□ **(지원 대상) 저탄소·디지털 전환** 사업주*(기업규모 무관)

* 최근 3년(19년~) 이내 사업재편(산업부)·사업전환(중기부)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
□ **(지원 내용)** 근로자 **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*** 등 **임차비** 지원

* 직무전환 교육·훈련 시설 임차, 기숙사 임차, 통근버스 임차 등

○ **(지원 금액)** 임차한 금액의 **50% 범위 내**에서 **최대 5억원** 지원

* 단,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%까지 지원

○ **(신청 주기) 3개월 단위**로 신청

* 지원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(단, 1개월 미만 미지원)

○ **(지원 기간) 최대 12개월**

○ **(신청 기한)** 승인 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임차 등 **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** 신청

*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

□ **(지원 요건)** ①**고용유지**에 대한 **노·사 합의**, ② **감원방지** 의무기간 (지원금 받은 기간 + 1개월), ③ **최소임차금액 300만원** 이상

□ **(예산) 50억원**(지원 사업장 50개소)

□ **(지원 절차)**

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	→	계획서 심사 및 (불)승인*	→	고용유지합의 이행·시설 임차 등	→	지원금 신청	→	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사업주 → 고용센터		고용센터		사업주		사업주 → 고용센터		고용센터 → 사업주